

# 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80,636,818	23,419,105
일반회계	772,661,542	23,179,846
특별회계	7,975,276	239,258
기타특별회계	7,975,276	239,258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334,104	10,023
지하수 관리 특별회계	107,087	3,213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097,796	32,934
주차장 특별회계	6,372,631	191,179
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	63,658	1,91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 5 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0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